

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제325회 정례회  
2013. 11. 26.

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04일

○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06일

3. 제안이유

-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(학교폭력예방대책과)를 삭제하고,
- 학생 야영·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며,
-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의 직속기관 분리와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조문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한시기구로 설치·운영하던 학교폭력예방대책과<sup>1)</sup>를 삭제함(안 제6조제2항)
- 나.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일부 중 임해수련운영부의 위치를 삭제하고, 종전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<sup>2)</sup>의 위치를 추가하며, 원장의 업무로 “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함(안 제20조제1항부터 제2항, 제22조제3호)

1) 존속기한 : 2014년 2월까지

2) 중원학생야영장, 제천학생야영장, 옥천학생야영장, 영동학생야영장, 청천학생야영장, (구)칠성초등학교 쌍곡분교장

- 다.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운영부를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여 “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”으로 하고 설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41조부터 제43조)
- 라.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의 설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44조부터 제46조)
- 마.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폐지함(안 제47조, 제50조 별표4)
- 바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바르게 함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삭제와 직속기관의 재편 및 신규 설치,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
- 한시기구로 설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로 조례에서 삭제하고,
- 학생 야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면서 원장의 업무에 “교직원 연수 및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였으며,
- 임해수련운영부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서 분리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“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”으로 신설하고,
- 2014. 2. 12. 개원예정인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의 설치 근거 마련과 조문내용의 전체적인 정비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그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이용율이 낮았던 학생야영장을 통합하는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과 신설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의 운영 활성화를 포함한 운영계획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## 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시행 2013.7.6.][법률 제11724호, 2013.4.5.]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6.12.] [대통령령 제24530호, 2013.5.8]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제8조(실·국 등 기구의 설치) ①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며, 실·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본청에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·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